

제2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기구 발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3. 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기구 발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3월 7일  
전문위원 권 오숙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14
- 나. 발의자: 최세진 의원 외 11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1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 2. 제안이유

위기기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기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위기기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활동장려 물품 등 위기기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 장려에 필요한 포상 근거 마련  
(안 제5조)
- 다.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마련  
(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1조
-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예산 편성 필요

다.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 13. ~ 1. 2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기 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 등 협력 대상자의 소요 경비 및 활동 장려 물품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안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포상대상을 규정하였음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6조에서는 업무적으로 공익성을 내포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포상 제외를 규정함

**제6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 의무자<sup>1)</sup>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안 제7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관협력과 지역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정부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sup>2)</sup>하여 보호대상자의 발견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 2)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 11. 25.)]

목표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New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추진 과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New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고도화</li> <li>▶ 자체 인력운용 개선 및 발굴역량 강화</li> <li>▶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li> <li>▶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기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li> <li>▶ 복지멤버십 및 민간기관 신청지원 확대로 위기기구 예방</li> <l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li> <li>▶ 발굴 후 공공·민간지원 연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li> <li>▶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강화</li> <li>▶ New 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li> <li>▶ 청년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및 정책 소통 강화</li> </ul>

- 우리 구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 제도를 운영<sup>3)</sup>하고 있으나 신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이 적극적이고 자발적 신고는 드문 현실이며, 유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은 신고 추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기준<sup>4)</sup>을 마련하고,
- 매체 활용 및 발굴경로를 다각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3) 우리 구 복지사각지대 관련 사업 운영 현황

구 분	사업내용	예 산
희망드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 동 희망드림단, 복지통장, 지역주민, 공무원 등</li> <li>○ 운영방법: 월 1회 취약지역, 상시 돌봄가구 순회방문 조사 및 안부확인</li> </ul>	운영비 지원 동별 60만원 (시비 100%)
명예사회복지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공동체(동 희망드림단, 복지통장 등)</li> <li>- 생활접점기관 종사자(도시가스검침원, 우체부, 고시원, 약국 등)</li> <li>-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공동주택관리자, 사회복지종사자 등)</li> </ul> </li> <li>○ 추진목적: 생활 밀착형 지역주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li> </ul>	운영비 지원 (총 200만원) (시비 100%)
우리동네돌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 20개동, 참여인원 52명 (50+센터를 통한 신청)</li> <li>○ 운영방법: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 중심으로 한 안부 확인(전화 및 가정방문)</li> </ul>	개인활동비 지급 (월 22만원) (시비 100%)

### 4) 신고 건당 지급금액, 1인당 지급한도, 지급수단, 환수기준 등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